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[도병두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661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5. 1. 23.

발 의 자 : 도병두 의원

찬 성 자 : 고성미 의원

1. 제안이유

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 상생성장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관내 시장, 상점가, 골목상권 등 상권을 다양화하고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청년상인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업무의 위탁 및 실태조사(안 제7조 및 제8조)
- 마. 지원사업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(안 제9조 및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
1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6조

2) 「청년기본법」 제18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5. 2. 4. ~ 2025. 2. 10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년상인”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청년상인 육성계획) 구청장은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
2.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

3.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
4.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청년상인 지원사업)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경영현대화, 정보화 등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
2.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프로그램 운영
3.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, 마케팅 지원
4. 청년상인 간 소통,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
5.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 등 경영 지원 사업
6.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
7.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업무의 위탁)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

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사업의 평가)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.

1. 사업 추진의 적합성
2.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, 고객 및 빈 점포의 증감
3.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·고객의 만족도 등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·관·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표창)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, 단체, 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[시행 2024. 9. 20.] [법률 제20455호, 2024. 9. 20., 일부개정]

제16조(청년상인의 육성)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
2. 창업을 위한 교육·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
3. 창업 성공사례 발굴·포상 및 홍보
4.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

□ 「청년기본법」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53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8조(청년 창업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,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